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14일
나. 발의자: 신홍식 의원 외 4명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, 일·가정 양립, 저출산 대책 및 민원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근검절약,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,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현행 제8조, 제12조 및 제16조)
나.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, 정·난관 복원 수술 휴가, 민원공무원 보호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

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,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현행 제8조(근검절약), 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, 제16조(공무 외의 국외 여행)를 삭제하여 현실적인 복무조례를 시행하고자 함.
- 안 제15조제3항(특별휴가) 중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→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15조제7항(특별휴가)부터 제15조제9항(특별휴가)까지는 ▲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(10일) ▲정·난관 복원 수술 휴가(3일) ▲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 휴가(5일 이내) 부여를 신설함.

○ 검토 결과

- 현행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은 여성공무원에 한정하여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남성공무원의 경우,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해 병원에 동행할 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. 따라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음으로, 공무원의 정·난관 복원 수술 3일 휴가 신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,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또한,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,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최종적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일부개정령의 신설 조항

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은 일하기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결과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흥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.

발 의 자: 신흥식, 이규선, 양송이
남완현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, 일·가정 양립, 저출산 대책 및 민원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검절약,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,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현행 제8조, 제12조 및 제16조)
- 나.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, 정·난관 복원 수술 휴가, 민원 공무원 보호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⑧ 공무원은 정·난관 복원 수술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⑨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휴가기간 및 절차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근검절약) ① 공무원은 화 목, 단결하여 명량한 직장분위 기를 조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 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야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 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제15조(특별휴가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<u>5일</u> 이 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 되,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5조(특별휴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1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제16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⑧ 공무원은 정·난관 복원 수습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⑨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대상, 휴가기간 및 절차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<삭 제>